

2019년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

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18년 11월 30일

예 천 군 수



1. 근무조건

☐ 근무기간 : 2019년 1월~12월 (12개월)

☐ 근무시간

- 장애인일반형일자리(전일제) : 일 8시간, 주 5일 근무

(1~11월 : 주 40시간 / 12월 : 주 37.5시간)

- 장애인일반형일자리(시간제) : 일 4시간, 주 5일 근무

(1~11월 : 주 20시간 / 12월 : 주 19시간)

- 장애인복지일자리(참여형) : 주 14시간, 월 56시간 근무

☐ 근무지 : 군청, 사업소, 읍·면사무소,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

☐ 보 수

- 장애인일반형일자리(전일제) : 1월~11월 1,745,150원

12월 1,636,600원 (4대 보험 가입)

- 장애인일반형일자리(시간제) : 1월~11월 872,580원

12월 826,650원 (4대 보험 가입)

- 장애인복지일자리(참여형) : 월 467,600원 (고용·산재보험 가입)

※ 보험료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☐ 모집인원 : 43명

☐ 모집기간 : 2018.12.03.(월)~12.13.(목) 09:00~18:00 (토·일 제외)

☐ 모집분야

- 장애인일반형일자리(전일제) : 17명
- 장애인일반형일자리(시간제) : 8명
- 장애인복지일자리(참여형) : 18명

☐ 면접일 : 2018.12.19.(수) 예정(변동 가능, 추후 개별 통보)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☐ 신청자격 :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

☐ 선발방법 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***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제외 대상**

-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
(단,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(근로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)
-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(단,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)
 - 소득이 없는 사업자 : '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' 제출
 - 연소득이 5,611,200원 이하인 사업자 : '소득금액증명원' 제출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
(단, 복지일자리 참여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)
 -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
 -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(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
-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(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의 경우 신청 가능)
-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
-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- 배치기관 임직원
-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
☐ 우선 선발 및 반복참여 제한기준

*** 우선선발기준**

- 1순위 : 최근 3년간('16년~'18년)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(1~3급)장애인
- 2순위 : 최근 3년간('16년~'18년)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(1~3급)장애인
최근 3년간('16년~'18년)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(4~6급)장애인
- 가점대상 : 여성가장, 기초생활수급권자, 특수학교(급)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
※ 참여 이력: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

*** 반복참여 제한 기준**

- 장애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 불가(타지역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포함)
- 참여기간 산정방법
 - 당해 연도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

**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(2년 초과 참여 가능)**

- 중증장애인(장애등급 1급~3급)
- 만 65세 이상인 자
-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
4. 제출서류 및 접수처

□ 제출서류

- (공통)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증명사진 부착, 자필서명 필수) 1부
-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(자필서명 필수) 1부
- (공통) 장애인등록증 사본(앞·뒷면 모두) 1부
 - ※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
- (공통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 - ※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(자필서명 필수)
- (해당자에 한함)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
 - ※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,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함.
- (해당자에 한함)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
 - ※ 일반형(전일제/시간제)일자리 지원시 : 컴퓨터 관련 자격증, 사회복지사 자격증
- (해당자에 한함) 2019년 특수학교(급), 대학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※ 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
- (해당자에 한함) 여성가장일 경우 아래 관련서류

구 분	첨 부 서 류	
배우자 무(無)	가족관계등록부	
배우자 유(有)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
	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	의사의 진단서
	군복무	복무확인서
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
	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
- 접 수 처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

5. 기타 참고사항

-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
-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“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

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
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
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-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**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**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- 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 - 24세 이하(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 -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
-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’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
(노동부 차별개선과-2304)

- 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’ 서식은 읍·면에서 직접수령하거나 예천군 홈페이지(<http://www.ycg.kr>) 공고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
6. 기타 문의사항 : 예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자(☎650-6211)
또는 주소지 읍·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(자필서명 필수) 1부.
2.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.
3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1부.
4.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(모집 공고문 참조) 각 1부.

[서식2]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

예천군청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.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

[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]

- 본인식별절차에 이용
-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, 지원 등 사업운영
-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격 여부 확인(장애등급유무조회,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, 사업자등록여부조회,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,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등)
-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
-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 ·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
-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
-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 경력조회

[수집 ·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
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e-mail주소, 학력, 경력, 졸업여부, 자격면허, 소득수준,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, 보수,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 등 수집된 개인정보
 - 장애유형 및 등급(복지카드), 장기요양등급판정여부,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, 개인병력 등 민감정보
 - 은행계좌(통장사본),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, 근무상황부, 보수대장, 4대보험 가입번호, 참여조건합의서 등
- ※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.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기관명, 배치기관, 사업유형, 직무명, e-mail, 학력, 경력, 졸업여부, 자격면허, 장애유형 및 등급, 장기요양등급판정여부, 기초생활수급여부, 개인병력 등 민감정보

[근거 법령]

-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
-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[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(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)

[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]

-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.

[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]

-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.

2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

제공처	목적	항목	기간	근거
사회보장 정보원 (사회보장 정보시스템)	· 참여자 변동정보 조회	· 성명, 주민번호, 성별, 주소, 연락처 등 수집된 개인정보	· 사업종료 후 3 년간 보유(보유기 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 보 파기)	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 19조
고용노동부 (일모아 시스템)	·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조회	· 성명, 주민번호, 성별, 주소, 연락처 등 수집된 개인정보	· 사업종료 후 3 년간 보유(보유기 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 보 파기)	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25조 2항
경찰서	· 성범죄 경력 조회	· 성명, 주민번호, 성별, 주소, 연락처 등 수집된 개인정보	· 사업종료 후 3 년간 보유(보유기 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 보 파기)	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 2
※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				

3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

[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]

·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, e-mail주소, 참여기관, 사업유형, 직무유형, 졸업예정 여부

· 장애유형 및 등급, 기초생활 수급여부

[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]

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(한국장애인개발원)

[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]

·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정보 제공

·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

[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]

동의일자부터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년까지

○ 귀하는 취업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거부할 경우에는 직업재활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

☐ 동의함
 ☐ 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본 “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”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미취업 사실 확인서		
신청인 (장애인일자리)	성 명	
	생년월일	
	주 소	
본인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미취업 장애인임을 숙지하고, 2018년 ____월 ____일 미취업 상태임을 확인합니다.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년 월 일		
※ 주의 :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및 불이익이 있습니다. ※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.		